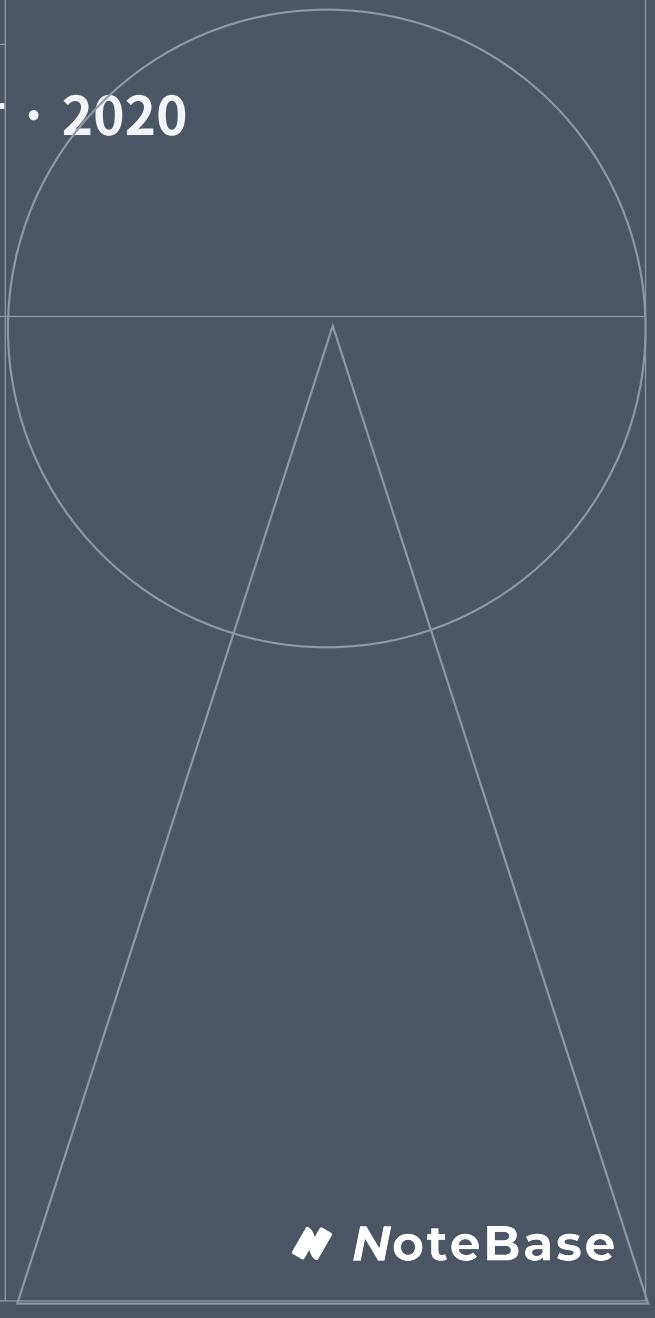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20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20

문 2.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③ 이해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에 있어,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성과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 모두를 충족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특성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표현충실성에 관해 합의할 수 있다'는 **검증가능성**의 설명이다. 이해가능성은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특성화·표시**하여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은 **근본적 질적특성**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려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으면서, 나타내려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② O: 목적적합성은 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쓰이는 예측가치나 과거 평가를 확인·수정하는 확인가치가 있으면 목적적합성을 가질 수 있다.

③ X: 서로 다른 독립적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의 표현충실성에 관해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은 **검증가능성**의 의미이다. 이때 관찰자들의 의견이 반드시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의 '이해가능성'을 '검증가능성'으로 고쳐야 한다. 이해가능성은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특성화·표시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다.

④ O: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은 **보강적 질적특성**이다.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를 서로 비교하고, 검증하고, 필요한 때에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 유용성을 높인다. 다만 이러한 특성만으로 목적적합성이나 표현충실성이 결여된 정보를 유용하게 만들 수는 없다.

NoteBase

문 3.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정책의 변경은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적용한다.

②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③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④ 전기오류는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우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바꾸는 대신, 변경의 영향을 받는 당기와 미래기간에 전진적으로 반영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회계정책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하는 원칙과 기준이다.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하여 새 정책을 과거부터 적용한 것처럼 비교표시된 전기 금액과 필요한 기초 자본을 조정한다. 다만 특정기간의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범위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기준서 최초 적용에 별도 경과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② X: 두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회계추정은 불확실한 금액을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추산하는 것이며, 새 정보에 따른 추정의 수정은 과거의 오류를 고치는 것과 다르다. 변경 효과는 과거 금액을 소급하여 고치지 않고, 당기에만 영향을 주면 당기에, 미래에도 영향을 주면 당기와 미래기간에 전진적으로 반영한다.

③ O: 측정기준은 자산·부채 등의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를 뜻하므로, **측정기준 자체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같은 측정기준 아래에서 금액을 추산하기 위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바꾸는 것은 전기오류의 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의 변경이라는 점과 구별한다.

④ O: 전기오류는 과거 재무제표 작성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신뢰성 있는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사용하여 생긴 오류이다. 중요한 전기오류는 **소급재작성**하여 처음부터 오류가 없었던 것처럼 전기 비교금액이나 필요한 기초 잔액을 수정한다. 다만 특정기간의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범위는 예외로 하며, 실무적으로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부터 수정한다.

NoteBase

문 4.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②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③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④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연구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연구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발단계의 지출과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한다. 개별 구입한 무형자산이라면 구입가격과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이 원가에 포함된다.

② O: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여기서 식별 가능하다는 것은 기업에서 **분리하여 매각·이전할 수 있거나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에서 발생**한다는 뜻이다. 특허권이나 저작권이 그 예이다.

③ O: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기업의 평판 등에서 생기는 가치를 개별 자산으로 분리하기 어렵고, 원가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식별 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④ X: 연구 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 지출은 무형자산이 아니라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 가능성 등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한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은 20×1년 초에 ₩15,000을 지급하고 항공기를 구입하였다. 20×1년 말 항공기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000이며, 공정가치는 ₩16,000이다. 감가상각누계액을 전액 제거하는 방법인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말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년 말 항공기의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이며, 공정가치는 ₩11,000이다. 상기의 자료만을 근거로 도출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재평가잉여금을 당해 자산을 사용하면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선택하고 있지 않다)

① 20×1년 말 재평가잉여금은 ₩2,000이다.

② 20×1년 말 항공기의 장부금액은 ₩16,000이다.

③ 20×2년에 인식하는 재평가손실은 ₩3,000이다.

④ 20×2년에 인식하는 재평가손실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20×2년의 재평가감소액 ₩3,000 중 기존 **재평가잉여금 ₩2,000을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 **₩1,000만 재평가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재평가감소액 전부가 당기손익의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20×1년 말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15,000 − ₩1,000 = ₩14,000이다. 이를 공정가치 ₩16,000으로 올리므로 재평가증가액은 ₩16,000 − ₩14,000 = ₩2,000이다. 이 증가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에 누적**하므로, 20×1년 말 재평가잉여금은 ₩2,000이다.

② O: 재평가모형에서는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감가상각누계액 ₩1,000을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전액 제거하면 순장부금액 ₩14,000이 남고, 이를 ₩2,000 증액한다. 따라서 20×1년 말 **재평가 후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인 ₩16,000**이다. 이 금액에서 이미 제거한 감가상각누계액을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③ X: 20×1년 말 재평가 시 감가상각누계액을 전액 제거했으므로, 20×2년 말의 감가상각누계액 ₩2,000은 그 이후 발생한 감가상각을 나타낸다. 20×2년 말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16,000 − ₩2,000 = ₩14,000이고, 공정가치가 ₩11,000이므로 재평가감소액은 ₩3,000이다. 다만 같은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이 있으면 그 잔액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차감하고 초과액만 당기손익의 손실로 인식한다. 문제에서는 사용 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으므로 재평가잉여금 ₩2,000이 남아 있다. 따라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재평가손실은 ₩3,000 − ₩2,000 = ₩1,000**이다.

④ O: 20×2년 재평가감소액 중 기존 재평가잉여금으로 상계하는 ₩2,000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어 재평가잉여금을 줄인다. 이를 초과하는 **₩1,000은 당기손익의 비용**인 재평가손실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재평가감소액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부분과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문 6. (주)한국은 20×1년 중에 지분증권을 ₩6,000에 현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이 가격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지분증권 취득 시 매매수수료 ₩100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동 지분증권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7,000이며, (주)한국은 20×2년 초에 지분증권 전부를 ₩7,200에 처분하였다. (주)한국이 지분증권을 취득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1년과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900 증가,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1,100 증가

②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1,000 증가,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1,100 증가

③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900 증가

④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증권은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처분 시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취득 수수료도 취득원가에 포함하므로 두 연도의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공통 해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증권은 취득에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자산의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이후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지분증권을 처분하더라도 누적된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20×1년에 지급한 매매수수료 ₩100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므로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또한 연말 공정가치 ₩7,000에 맞추면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므로, 취득과 연말 평가 모두 20×1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2년 초 ₩7,200에 처분할 때에도 직전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전기에 누적된 기타포괄손익 역시 당기손익으로 옮기지 않으므로 20×2년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이 없다. 따라서 두 연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없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3년 말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손상시점의 순공정가치는 ₩600,000이고 사용가치는 ₩550,000이다. 20×3년 말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은?

◯ 취득원가 ₩2,000,000
◯ 잔존가치 ₩200,000
◯ 내용연수 6년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① ₩550,000
② ₩600,000
③ ₩650,000
④ ₩70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까지 낮춘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므로 손상 후 장부금액은 600,000원이다.

공통 해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낮춘다. 회수가능액은 자산을 처분하여 회수할 수 있는 순공정가치와 계속 사용하여 회수할 수 있는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처분과 계속 사용은 자산의 가치를 회수하는 대안이므로, 두 금액을 합하거나 작은 금액을 택하지 않는다.

20×3년 말 순공정가치 600,000원이 사용가치 550,000원보다 크므로 회수가능액은 600,000원이다. 문제에서 이미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어졌으므로,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은 600,000원**이 된다.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정액법으로 구하는 손상 전 장부금액은 손상차손 자체를 계산할 때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손상 후 장부금액을 묻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NoteBase

문 8. 다음은 (주)한국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로서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장부상 수량과 실지재고 수량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기말상품의 실지재고 수량은?

◯ 기초상품재고액 ₩120,000
◯ 당기매입액 ₩900,000
◯ 장부상 기말상품재고액(단위당 원가 ₩1,000) ₩200,000
◯ 재고자산감모손실 ₩30,000

① 100개
② 140개
③ 170개
④ 200개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감모손실 30,000원은 **실제로 부족한 재고 30개**의 원가이다. 장부상 200개에서 이를 차감하면 기말 실지재고 수량은 170개이다.

계산 과정

장부상 기말수량: 기말상품의 장부금액 200,000원을 단위당 원가 1,000원으로 나누면 $\frac{200,000}{1,000} = 200$개이다. 이는 장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기록된 수량이다.

감모수량: 이 문제의 감모손실은 **장부상 수량과 실지재고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므로, 손실액을 단위당 원가로 나누어 부족한 수량을 구한다. $\frac{30,000}{1,000} = 30$개이므로 실제 재고는 장부보다 30개 적다.

실지재고 수량: 장부상 수량에서 감모수량을 차감하면 $200 - 30 = 170$개이다. 따라서 기말상품의 실지재고 수량은 ③의 170개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9.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11월에 발생한 거래이다.
◯ 상품 ₩70,000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 원가 ₩70,000의 상품을 ₩100,000에 외상으로 판매하다.
(주)한국은 20×1년 12월에 상품 판매대금 ₩100,000 중 ₩50,000을 회수하였고, 상품의 매입원가 ₩70,000 중 ₩35,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기준에 의한 20×1년의 순현금유입액과 발생기준에 의한 20×1년의 순이익은?

① 현금기준에 의한 20×1년 순현금유입액: ₩15,000, 발생기준에 의한 20×1년 순이익: ₩15,000
② 현금기준에 의한 20×1년 순현금유입액: ₩15,000, 발생기준에 의한 20×1년 순이익: ₩30,000
③ 현금기준에 의한 20×1년 순현금유입액: ₩30,000, 발생기준에 의한 20×1년 순이익: ₩15,000
④ 현금기준에 의한 20×1년 순현금유입액: ₩30,000, 발생기준에 의한 20×1년 순이익: ₩3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현금기준은 **실제 현금 수입·지출**을 반영하므로 순현금유입액은 15,000원이다. 발생기준은 **판매한 상품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대응시키므로 순이익은 30,000원이다.

계산 과정

현금기준 순현금유입액: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받은 현금에서 지급한 현금을 뺀다.** 11월의 외상매입과 외상판매에는 현금 이동이 없고, 12월에 판매대금 50,000원을 회수하고 매입대금 35,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20×1년 순현금유입액은 50,000 − 35,000 = 15,000원이다.

발생기준 순이익: 현금의 회수·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이 발생한 기간에 관련 비용을 대응**시킨다. 11월에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70,000원은 처음에는 재고자산이지만, 그 상품을 판매하면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한다. 따라서 11월의 매출액은 100,000원, 매출원가는 70,000원이며, 20×1년 순이익은 100,000 − 70,000 = 30,000원이다. 12월의 대금 회수와 지급은 각각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줄이는 거래이므로 수익과 비용을 다시 인식하지 않는다.

순현금유입액 15,000원과 순이익 30,000원의 조합은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 액면이자율 연 8%, 5년 만기의 사채를 ₩92,416에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12월 31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20×1년 1월 1일 시장이자율은 연 10%이다. 동 사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계산결과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사채발행 시 차변에 현금 ₩92,416과 사채할인발행차금 ₩7,584을 기록하고, 대변에 사채 ₩100,000을 기록한다.

② 20×1년 12월 31일 이자지급 시 차변에 사채이자비용 ₩9,242을 기록하고 대변에 현금 ₩8,000과 사채할인발행차금 ₩1,242을 기록한다.

③ 20×1년 12월 31일 사채의 장부금액은 ₩91,174이다.

④ 사채만기까지 인식할 총 사채이자비용은 액면이자 합계액과 사채할인발행차금을 합한 금액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할인발행한 사채는 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할수록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따라서 20×1년 말 장부금액은 ₩91,174이 아니라, 발행금액에 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242을 더한 ₩93,658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이인 ₩100,000 − ₩92,416 = ₩7,584이다. 사채는 대변에 액면금액 ₩100,000을 기록하고, 차변에는 실제 수취한 현금 ₩92,416과 사채할인발행차금 ₩7,584을 기록한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의 액면금액에서 차감하는 계정**이므로 발행일의 장부금액은 ₩92,416이다.

② O: 유효이자율법에서는 **기초 장부금액에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을 곱하여 사채이자비용을 계산한다. 첫해 이자비용은 ₩92,416 × 10% = ₩9,241.6을 원 단위로 반올림한 ₩9,242이다. 현금 지급이자는 액면금액에 액면이자율을 곱한 ₩100,000 × 8% = ₩8,000이다. 두 금액의 차이인 ₩1,242은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다. 따라서 차변에 사채이자비용 ₩9,242을, 대변에 현금 ₩8,000과 사채할인발행차금 ₩1,242을 기록한다.

③ X: 할인발행차금 상각은 사채의 차감계정 잔액을 줄이므로 **사채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20×1년 말 장부금액은 ₩92,416 + ₩1,242 = ₩93,658이다. 또는 미상각 할인발행차금 ₩7,584 − ₩1,242 = ₩6,342을 액면금액에서 차감하여 ₩100,000 − ₩6,342 = ₩93,658로 구할 수 있다. ₩91,174은 상각액을 장부금액에서 빼서 계산한 금액으로, 증가 방향을 반대로 적용했다.

④ O: 매년 이자비용은 현금 지급이자에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을 더한 금액이다. 만기까지 할인발행차금 ₩7,584이 모두 상각되므로 **총 이자비용에는 현금 지급이자와 할인발행차금 전액이 포함된다**. 5년간 액면이자 합계액은 ₩8,000 × 5년 = ₩40,000이며, 총 사채이자비용은 ₩40,000 + ₩7,584 = ₩47,584이다.

NoteBase

문 11. 원가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작업자가 받는 급여는 노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지만, 총생산량에 따라 작업자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면 총노무원가는 계단원가가 된다.

② 제품수준(유지)원가는 제품 생산량과 무관하게 제품의 종류 수 등 제품수준(유지)원가동인에 비례하여 발생한다.

③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발생하는 기업에서 전부원가계산을 채택하면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제품단위당 이익은 크게 보고된다.

④ 초변동원가계산에서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제품원가로 재고화하고 제조간접원가는 모두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만** 제품원가로 재고화한다. 직접노무원가는 제조간접원가와 함께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직접노무원가까지 재고화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월급제에서는 작업시간이 조금 변해도 근로자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일정하다. 그러나 생산량 증가로 기존 인원의 작업능력을 넘어서면 인원을 추가해야 하므로 총노무원가가 한 단계 증가한다. 따라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는 일정하다가 인원 증감 시 달라지는** 계단원가가 된다.

② O: 제품수준(유지)원가는 특정 제품의 생산·판매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원가로, 제품설계나 제품규격 유지에 드는 원가가 그 예이다. 같은 제품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유지해야 할 제품의 종류 수 등**이 원가 발생을 좌우한다. 따라서 제품 단위 수를 원가동인으로 하는 단위수준원가와 구별된다.

③ O: 전부원가계산은 변동제조원가뿐 아니라 고정제조간접원가도 제품원가에 포함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총액이 일정한 범위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같은 금액을 더 많은 제품에 배분하므로 **제품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가 감소**한다. 판매단가와 다른 단위원가가 같다면 단위당 제품원가가 낮아져 제품단위당 이익이 크게 보고된다.

④ X: 초변동원가계산은 생산량에 따라 직접 변하는 원가를 직접재료원가로 한정하여 **직접재료원가만 제품원가**로 재고화한다. 직접노무원가와 변동·고정제조간접원가는 모두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제품원가로 재고화한다'는 부분을 '직접재료원가만 제품원가로 재고화한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현금흐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자원의 변동 즉,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나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가 잦아 총 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③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등의 취득, 유형자산의 교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④ 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장기투자증권·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정답 1번

①

현금흐름표는 **경상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으로 구성된다. 선지는 경상활동을 영업활동으로 잘못 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현금흐름표)
①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로서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11.28>

②

현금 유입·유출은 **서로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래가 빈번하고 총액이 크며 만기가 짧으면 순증감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②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나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아 총 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NoteBase

③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 취득이나 자산 교환처럼 **현금이 오가지 않는 중요한 거래는 주석에 공시**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③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등의 취득, 유형자산의 교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는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④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하거나 장기투자증권·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무형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거래는 **투자활동**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현금흐름의 구분)
②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장기투자증권 · 일반유형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NoteBase

문 1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도로는 관리, 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부채의 가액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국가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①

국가의 도로는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이 유지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감가상각하지 않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2항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 · 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 · 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용역 잠재력이 취득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NoteBase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상태표의 자산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計上)한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①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4.11.28, 2021.1.7>
1. 교환, 기부채납,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공정가액
2.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직전(直前) 회계실체의 장부가액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별도의 평가기준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부채의 평가기준)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의 가액은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부채의 평가기준)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NoteBase

④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할 의무가 없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①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①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NoteBase

문 14. (주)한국은 가공원가에 대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당기에 완성된 제품은 총 100단위이고, 총직접재료원가는 ₩6,000이다.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4시간의 기계작업시간이 소요되고 5개 부품이 필요하다. 당기에 생산된 제품 100단위를 단위당 ₩200에 모두 판매가 가능하다고 할 때, 매출총이익은?

회사의 생산활동, 활동별 배부기준, 가공원가 배부율은 다음과 같다.

생산활동	활동별 배부기준	가공원가 배부율	
기계작업	기계작업시간	기계작업시간당	₩10
조립작업	부품수	부품 1개당	₩6

① ₩7,000

② ₩9,000

③ ₩11,000

④ ₩13,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활동별 사용량에 배부율을 곱하면 기계작업 가공원가 4,000원과 조립작업 가공원가 3,000원이 발생한다. 직접재료원가를 더한 **매출원가 13,000원**을 매출액 20,000원에서 빼면 매출총이익은 7,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기계작업 가공원가: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각 활동의 배부기준 사용량에 해당 배부율을 곱하여** 원가를 배부한다. 제품 100단위에 필요한 총기계작업시간은 100단위 × 4시간 = 400시간이다. 표의 기계작업시간당 배부율 10원을 적용하면 기계작업 가공원가는 400시간 × 10원 = 4,000원이다.

2. 조립작업 가공원가: 제품 1단위에 부품 5개가 필요하므로 총부품수는 100단위 × 5개 = 500개이다. 표의 부품 1개당 6원은 **조립작업 가공원가의 배부율**이므로, 조립작업 가공원가는 500개 × 6원 = 3,000원이다. 두 활동의 가공원가 합계는 4,000원 + 3,000원 = 7,000원이다.

3. 매출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를 합하면 완성된 제품 100단위의 총제조원가는 6,000원 + 7,000원 = 13,000원이다. **완성된 제품 100단위를 모두 판매**하므로 이 제품들의 제조원가 전액이 매출원가가 된다.

4. 매출총이익: 매출액은 판매량 100단위 × 단위당 판매가격 200원 = 20,000원이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므로 20,000원 − 13,000원 = 7,000원이며,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한 (주)한국은 동 기간에 5,000단위의 제품을 생산·완성하였으며, 단위당 ₩1,200에 판매하고 있다.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300,000이 많을 경우, 20×1년 판매수량은?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450 고정제조간접원가 ₩500,0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300 고정판매관리비 ₩300,00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100

① 1,000단위
② 2,000단위
③ 3,000단위
④ 4,000단위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전부원가계산에서는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만큼 비용 인식이 이연되어 변동원가계산보다 영업이익이 커진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가 100원이므로 이익 차이 300,000원은 기말재고 3,000단위에 해당하며, 생산량에서 이를 빼면 판매량은 2,000단위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영업이익 차이의 원인: 전부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하여 판매된 제품의 몫만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변동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 전액을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팔리지 않은 제품이 있으면 전부원가계산에서 **기말재고에 남아 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만큼 당기 비용이 적고 영업이익이 크다.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으므로 기초재고는 없다. 판매가격과 변동원가는 두 방법의 이익 차이를 만들지 않으며, 고정판매관리비 300,000원도 두 방법 모두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2.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 총액 500,000원을 **생산·완성수량 5,000단위**에 배분한다. 단위당 배부액은 $\frac{500,000}{5,000} = 100$원이다. 즉, 전부원가계산에서는 제품 한 단위에 고정제조간접원가 100원이 포함된다.

3. 기말재고수량: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300,000원 더 크다는 것은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0원이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다음 기간으로 이연되었다는 뜻이다. 이 금액을 단위당 배부액으로 나누면 기말재고수량은 $\frac{300,000}{100} = 3,000$단위이다.

4. 판매수량: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생산·완성수량은 판매수량과 기말재고수량의 합이다. 따라서 판매수량은 5,000 − 3,000 = 2,000단위이며, ②의 2,000단위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문 16. (주)한국은 급여체계를 일부 변경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만약 매출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변경한다면 고정급여는 ₩6,000이 절약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인한 손익분기점 판매량의 변화는?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100
공헌이익률	60 %
연간고정원가	
임차료	₩15,000
급여	₩21,000
광고선전비	₩12,000

① 40단위 증가

② 40단위 감소

③ 50단위 증가

④ 50단위 감소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성과급 도입으로 고정원가는 줄지만, **단위당 공헌이익도 60원에서 50원으로 감소**한다. 변경 후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840단위로, 기존 800단위보다 **40단위 증가**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손익분기점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공헌이익으로 고정원가를 모두 충당하여 이익이 0이 되는 지점이다. 연간 고정원가를 F, 단위당 공헌이익을 c,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Q라고 하면 $Q = \frac{F}{c}$이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제품 한 단위를 판매할 때 고정원가 회수에 기여하는 금액이다.

변경 전: 연간 고정원가는 임차료 15,000원 + 급여 21,000원 + 광고선전비 12,000원 = 48,000원이다. 단위당 판매가격이 100원이고 공헌이익률이 60%이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은 100 × 60% = 60원이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frac{48{,}000}{60} = 800$단위이다.

성과급 반영: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므로 성과급은 **판매량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원가**이다. 제품 한 단위를 판매할 때 성과급은 100 × 10% = 10원이므로, 변경 후 단위당 공헌이익은 60 − 10 = 50원이다.

변경 후: 고정급여가 6,000원 절약되므로 연간 고정원가는 48,000 − 6,000 = 42,000원이다. 이를 변경 후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누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frac{42{,}000}{50} = 840$단위이다. 즉, 고정원가를 모두 회수하려면 연간 840단위를 판매해야 한다.

판매량 변화: 840 − 800 = 40단위이므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40단위 증가한다. 이는 ①의 '40단위 증가'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7. (주)한국은 하나의 공정에서 단일 제품을 생산하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 직접재료 중 1/2은 공정 초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가공이 50% 진행된 시점부터 공정의 종점까지 공정 진행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입된다.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검사는 공정의 60% 시점에서 실시되며 일단 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손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정상공손은 검사통과수량의 10%로 잡고 있다. 3월의 수량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비정상공손수량 직접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수량(개)	가공원가완성도(%)
기초재공품	2,800	30 %
완성량	10,000	
공손량	2,000	
기말재공품	3,000	70 %

① 420개

② 430개

③ 440개

④ 450개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기말재공품도 검사시점인 60%를 지났으므로 검사통과수량에 포함하면 비정상공손수량은 700개이다.
검사시점에는 직접재료가 **총소요량의 60%**만큼 투입되어 있으므로, 직접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700 × 60% = 420개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검사통과수량: 완성품환산량은 미완성품 등에 투입된 원가를 완성품 수량으로 환산한 값이다. 먼저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의 실제 수량을 구한다. 검사시점은 가공완성도 60%이고, 검사를 통과한 뒤에는 공손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완성품 10,000개뿐 아니라 가공완성도 70%인 **기말재공품 3,000개도 검사통과수량에 포함**된다. 검사통과수량은 10,000 + 3,000 = 13,000개이다. 기초재공품은 가공완성도가 30%여서 기초에 아직 검사받지 않았으므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그 수량을 검사통과수량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 비정상공손수량: 정상공손은 전체 공손량이 아니라 **검사통과수량의 1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상공손수량은 13,000 × 10% = 1,300개이고, 실제 공손량 2,000개 중 이를 초과한 2,000 − 1,300 = 700개가 비정상공손수량이다.

3. 검사시점의 직접재료 투입률: 직접재료의 절반은 공정 초에 이미 투입되어 있다. 나머지 절반은 가공완성도 50%부터 100%까지 비례적으로 투입되므로, 검사시점인 60%에서는 이 후반 투입구간의 $\frac{60-50}{100-50} = 20\%$만큼 진행되어 있다. 따라서 총 직접재료 투입률은 $\frac{1}{2} + \frac{1}{2} \times \frac{60-50}{100-50} = 60\%$이다. 이 60%는 **직접재료의 투입 조건으로 계산한 비율**이며, 가공완성도와 수치가 같다는 이유로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다.

4. 비정상공손의 완성품환산량: 비정상공손 700개는 검사시점에서 발견되므로, 각 공손품에 투입된 직접재료는 완성품 한 개에 필요한 양의 60%이다. 따라서 비정상공손수량 직접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700 × 60% = 420개이며, ①의 420개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8. (주)한국의 20×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법으로 구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감가상각비 ₩50,000 유상증자 ₩2,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 건물의 취득 ₩1,500,000
사채의 상환 ₩800,000 매출채권의 증가 ₩150,000
매입채무의 감소 ₩100,000 재고자산의 증가 ₩200,000

① ₩320,000
② ₩620,000
③ ₩1,070,000
④ ₩1,38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간접법에서는 이익에 포함된 **비현금비용을 가산**하고,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으로 생긴 현금 차이를 조정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00원에 감가상각비와 유형자산처분손실 70,000원을 더하고 운전자본 변동액 450,000원을 차감하면 영업활동현금흐름은 62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간접법은 발생주의로 계산한 이익을 영업활동의 현금 유입·유출 기준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이 문제에서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00원에서 출발하여 제시된 자료를 조정한다.

감가상각비와 유형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50,000원은 이익을 줄였지만 당기에 현금이 나간 비용이 아니므로 가산한다.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원도 이익에 반영된 손실이며, 자산 처분으로 받은 현금은 투자활동에서 다루므로 영업활동 계산에서는 가산하여 제거한다. 두 항목을 조정한 1,000,000 + 50,000 + 20,000 = 1,070,000원은 **영업 관련 자산·부채 변동을 반영하기 전 금액**이다.

매출채권의 증가: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중 **아직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50,000원 늘었으므로 150,000원을 차감한다.

재고자산의 증가: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된 금액보다 재고 취득액이 200,000원 더 많다는 뜻이므로 200,000원을 차감한다. 재고 취득대금의 미지급 여부는 매입채무 변동에서 따로 조정한다.

매입채무의 감소: 당기 매입액 외에 기존 외상매입대금도 지급하여 **매입액보다 현금 지급액이 100,000원 더 많으므로** 100,000원을 차감한다. 이에 따라 매출채권·재고자산·매입채무 변동에 따른 차감액 합계는 150,000 + 200,000 + 100,000 = 450,000원이다.

영업활동 계산에서 제외할 거래: 건물 취득 1,500,000원은 투자활동의 현금유출이다. 유상증자 2,000,000원은 재무활동의 현금유입이고, 사채 상환 800,000원은 재무활동의 현금유출이다. 이 금액들은 영업활동현금흐름에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070,000 − 450,000 = 620,000원으로, ②의 620,000원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란 종업원이 당기와 미래 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채무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② 퇴직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③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순확정급여자산은 초과적립액과 자산인식상한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④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 또는 순확정급여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확정급여채무는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으로 생긴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를 미래에 지급하더라도, 아직 제공하지 않은 미래 근무용역에 대한 급여까지 현재의 채무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으로 생긴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다. 사외적립자산은 이 채무 자체를 측정할 때 차감하지 않는다. 선지의 '당기와 미래 기간'은 '당기와 과거 기간'으로 고쳐야 한다. '미래지급액'은 급여의 지급 시점이 미래라는 뜻이며, 미래에 제공할 근무용역까지 채무에 포함한다는 뜻은 아니다.

② O: 퇴직급여채무는 미래에 지급할 금액이므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할인한다.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해당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으면 그 통화의 국공채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참조하는 채권의 통화와 만기는 퇴직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 지급기간과 일관되어야 한다.

③ O: 초과적립액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자산인식상한은 제도에서 환급받거나 미래 기여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이다. 따라서 순확정급여자산은 **초과적립액과 자산인식상한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넘어서 자산을 인식하지 않도록 한다.

④ O: 보험수리적손익 등 순확정급여부채 또는 순확정급여자산의 재측정요소는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이렇게 인식한 금액은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 내에서 다른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는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재분류와 구별된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의 기능통화는 원화이며, 달러화 대비 원화의 환율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캐나다에 소재하는 사업목적의 토지를 $10,000에 취득하였고, 20×1년 12월 31일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는 $12,000이다. (주)한국은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재평가를 실시한다. 20×2년 3월 1일에 토지를 $15,000에 판매한 경우 인식해야 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일자	20×1. 10. 1.	20×1. 12. 31.	20×2. 3. 1.
환율	₩1,000	₩1,040	₩1,020

① ₩5,300,000

② ₩5,100,000

③ ₩2,820,000

④ ₩2,48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처분이익은 **처분대가에서 직전 재평가 후 장부금액을 뺀 금액**이다. 처분대가는 처분일 환율로, 재평가 후 장부금액은 재평가일 환율로 환산하므로 15,300,000원 − 12,480,000원 = 2,82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취득원가: 기능통화가 원화이므로 외화로 표시된 거래금액을 원화로 환산한다. 20×1년 10월 1일 취득원가는 취득대금 $10,000에 취득일 환율 1,000원/달러를 곱한 10,000,000원이다.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2. 재평가 후 장부금액: 토지는 비화폐성자산이며, 재평가모형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는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20×1년 12월 31일 장부금액은 $12,000 × 1,040원/달러 = 12,480,000원이다. 취득원가와의 차이 2,480,000원은 재평가증가액으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어 재평가잉여금으로 누적된다.

3. 처분대가: 20×2년 3월 1일 판매대금 $15,000에는 처분일 환율 1,020원/달러를 적용한다. 원화 처분대가는 $15,000 × 1,020원/달러 = 15,300,000원이다. 직전 재평가 후 장부금액 12,480,000원을 처분일 환율로 다시 환산하지 않는다.

4. 유형자산처분이익: 처분대가에서 제거되는 토지의 장부금액을 차감하므로 15,300,000원 − 12,480,000원 = 2,820,000원이며, ③의 금액에 해당한다. 기존 **재평가잉여금을 처분이익에 가산하지 않는다**. 처분 시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는 자본 내 대체이므로 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